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6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이훈기 · 신장식
이해민 · 서왕진 · 정춘생
이상식 · 박은정 · 윤종오
정혜경 · 김재원 · 김선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·조사,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·조사,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5 신설).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5(피해학생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)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·조사, 심의위원회의 심의, 보호조치의 신청, 분쟁조정, 행정쟁송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-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1항에 따른 변호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6조의5(피해학생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) 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·조사, 심의위원회의 심의, 보호조치의 신청, 분쟁조정, 행정쟁송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제1항에 따른 변호사로 하여금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</u></p>